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7. 5.

발 의 자 : 박교상 의원 외 6인

1. 제안 이유

- 「주택건설촉진법」을 토대로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 되고 「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보완·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6조)
-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명칭 변경
(안 제4조, 제5조, 제7조)

3. 참고 사항

-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하고 “농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3”을 “「주택법」 제62조”로 하고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중 “부진하므로써 주택은행에”를 “부진함으로써 국민은행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납부하지 아니할 ”을 “납부하지 아니한 ”으로 한다.

제10조중 “공동주택 관리령”을 “「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명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제명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 띄어 쓰기 적용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주택법」-- ----- ----- ----- -----	주택건설촉진 법 폐지 후 주택법으로 개정 (2003. 5. 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 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주택법」 제2조제3호----- ----- -----	”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 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은행”이라한다)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은행 통합 으로 명칭 변경
제2장 국민주택 건설사업	제2장 국민주택 건설사업	
제5조(세입.세출) ①(생략) ②(생략) 1 ~ 3(생략)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 7(생략)	제5조(세입.세출)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 국민은행----- ----- 5 ~ 7(현행과 같음)	”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6조(융자조건)①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3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영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융자조건)①----- -----「주택법」 제62조-----건설교통부장관----- -----.	주택건설촉진법 폐지 후 주택법으로 개정 및 행정부처명 변경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하므로써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부진함으로써 국민은행----- ----- -----	은행 통합으로 명칭 변경
제8조(할부금등 상환)①(생략)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할부금등 상환)①(현행과 같음) ②----- -----납부하지 아니한----- ----- -----	지구 수정
제10조(관리비)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 관리령” 및 동관리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리비)----- ----- -----「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공동주택 관리령 폐지 후 주택법 시행령으로 개정

참 고 자 료

□ 주 택 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6916호][전문개정]

◇ 개정 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 관련 조항

제2조 (정의<개정 2005.7.1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8, 2005.7.13, 2005.12.23, 2007.4.20>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8, 2005.7.13, 2007.1.11>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8.12.5, 1980.1.4, 1981.4.7, 1987.12.4, 1992.12.8, 1995.12.29, 1997.12.13, 2000.1.28>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 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7, 1997.12. 13>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

[illegible]